

1. 개정 이유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 71명을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 시	경기 도	강원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특별 자치 도
총계	65,860	7,490	3,748	2,980	3,397	1,618	1,627	1,399	585	11,271	4,463	2,845	4,266	3,456	4,516	5,489	5,481	1,229
소방 준감 이하	65,860	7,490	3,748	2,980	3,397	1,618	1,627	1,399	585	11,271	4,463	2,845	4,266	3,456	4,516	5,489	5,481	1,229

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08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